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69 발의연월일: 2020. 10. 29.

발 의 자:이용우·홍정민·위성곤

이수진 · 홍성국 · 송재호

문진석 · 김남국 · 윤준병

이광재 · 김주영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금융투자업자(은행, 증권회사 등)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음.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. 특히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.

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인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,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(안 제3조제2호). 법률 제 호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"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에"를 "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"로, "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"을 "금융상품판매업 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,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다음	제3조(적용 범위)
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	
니한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에	2.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
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	<u>법률」 제2조에금융상</u>
체결하기 위한 거래	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
	에 따른 대출성 상품, 투자성
	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
	계약을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